

# 심 사 보 고 서

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

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87
----------	-----

2022. 2. 25.(금)  
정책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2년 2월 14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2월 16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2월 24일

-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신용식 기획관리실장)

가. 제안사유

- 2022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충북연구원 추가 출연금 지원 : 109,901천원
  - 타 시도 연구원과의 임금격차\* 해소를 위해 장기근속 연구직 「승진 가산 제도」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추가 출연
- \* 임금격차 비율('20년 기준) : [전국평균 대비] 신규 90.4% → 10년 근속 78.6%

## 3. 검토보고 요지 (이덕항 수석전문위원)

### 가. 법적근거

- 본 출연 변경계획안은 2022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하였음.

□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본 계획안은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, 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2항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제출되었음.

□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(운영재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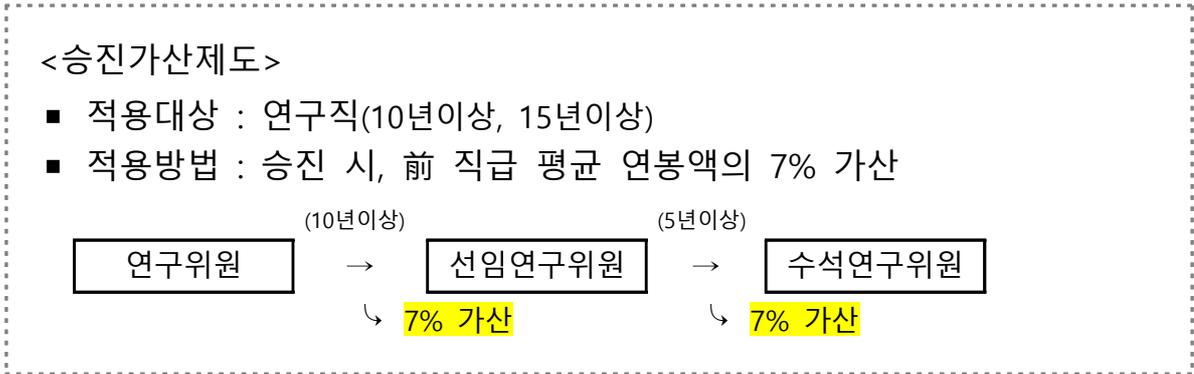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.

□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운영경비)

- 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## 나. 종합의견

- 충북연구원에 2022년 본예산 4,620,000천원을 출연하였고, 이번에 연구직 승진가산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인건비 109,901천원을 추가 출연하려는 것임



- 충청북도 씽크탱크(Think Tank) 역할을 담당하는 충북연구원의 임금 수준은 타시도 대비 신규연구원의 경우 90.4%, 10년이상 장기근속자의 경우 78.6% 수준으로 임금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상향조정이 필요함.
- 보수제도 개선은 우수연구원의 역외유출 방지, 연구위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양질의 연구성과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건비 상승을 통한 처우개선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은 예측가능한 사안으로 단순히 출연금 증액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수탁과제 전입금 등 자체수입 확대를 통한 자체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.
- 동 계획안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출연여부만을 의결하는 것으로, 인건비 증액에 대한 출연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를 통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마지막으로 도의회에 출연여부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예산안 제출에 앞서 출연계획안을 미리 제출하여야 하므로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.

[참고 1] 충북연구원 출연 변경계획안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2022년 본예산(A)	2022년 추경안(B)	증감액 (B-A)	산출기초
총계(C+D)		4,620,000	4,729,901	109,901	
일반 회계	소계(C)	4,270,000	4,379,901	109,901	
	① 목적사업비 (연구사업비)	850,000	850,000	-	
	자체사업	489,000	489,000	-	· 창의기획과제, 기본과제, 기획과제, 연구개발준비금
	기획사업	361,000	361,000	-	· 발간사업, 분원운영, 청년연구자 역량강화 사업
	② 일반관리비	3,420,000	3,529,901	109,901	
	인건비	2,880,000	2,989,901	109,901	· 보수(원장1, 연구직30, 일반직 12) · 제수당(시간외수당, 연구수당 등) · 기간제근로자보수(청소원) · 연구직 승진가산금(신규)
	물건비	540,000	540,000	-	· 일반운영(사무관리)비 · 복리후생비(4대보험 등) · 평가급(경영평가성과급) 등
특별 회계	공공투자분석센터 (D)	350,000	350,000	-	· 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비

[참고 2] 유사동종기관(타 시도 연구원) 보수 비교

(단위 : 명 / 천원)

구분	설립일	인력현황	평균근속년수	평균임금	신규평균임금
서울	' 92. 7.	221	9년 4월	70,562	48,254
광주전남	' 91.12.	45	12년 4월	94,879	50,228
제주	' 97. 5.	41	9년 4월	76,787	67,212
부산	' 92. 8.	59	13년 2월	85,763	39,000
인천	' 96. 4.	54	13년 6월	87,565	69,343
경기	' 95. 2.	92	11년 5월	87,931	45,292
충남	' 95. 6.	82	10년 10월	70,709	45,003
대전세종	' 01. 3.	44	8년 5월	83,537	(미기제)
울산	' 20. 12.	38	11년 8월	70,009	51,733
강원	' 94. 9.	44	12년 2월	81,606	64,584
경남	' 92. 7.	43	8년	81,168	42,593
전북	' 05. 3.	69	7년 4월	62,911	40,424
대구경북	' 91. 6.	76	13년 8월	80,657	49,386
충북	' 90. 5.	43	10년 8월	61,529	45,817
평균		68	10년 5월	78,258	50,682
(충북비율)		63.3%		78.6%	90.4%

\* 출처 : 클린아이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별 공시(기준 : 2020년), <https://www.cleaneye.go.kr>

[참고 3] 충북연구원 최근 연구실적

(단위 : 건)

구분	계	기본과제	창의·기획과제	정책과제	수탁과제	비고
2019년도	145	25	13	60 (37)	47 (20)	( ) : 도 의뢰
2020년도	132	24	25	53 (31)	30 (8)	( ) : 도 의뢰
2021년도	147	25	18	55 (30)	49 (17)	( ) : 도 의뢰

< 과 제 구 분 >

- 기본과제: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과제(연구원 자체과제, 연구직 1인 1과제)
- 창의·기획과제: 지역현안에 대한 선제적 연구 및 신규 아이템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과제
- 정책과제: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무상으로 수행하는 과제
- 수탁과제: 외부로부터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과제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」

#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

의안 번호	98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2년 2월 14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2022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## 2. 출연 개요

(단위 : 천원)

출연기관	출연액			출연 필요성
	계 (A=B+C)	기정 (B)	금회추경 (C)	
충북연구원	4,729,901	4,620,000	109,901	- 연구직 승진 가산제도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(승진가산금) 지원 필요

※ 관계법령(출연근거) :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, 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2항

## 3. 주요내용

충북연구원 추가 출연금 지원 : 109,901천원

- 타 시도 연구원과의 임금격차\* 해소를 위해 장기근속 연구직 「승진 가산제도」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추가 출연

\* 임금격차 비율('20년 기준) : [전국평균 대비] 신규 90.4% → 10년 근속 78.6%

## 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**붙임**

< 출연 변경계획 >

<b>사업명</b>	충북연구원 운영	<b>금회출연금액</b>	109,901천원
<b>출자·출연기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관명 : (재)충북연구원</li> <li>○ 대표 : 정초시</li> <li>○ 일반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재지 :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-1</li> <li>- 인력 : 정원 46명(현원 42명)</li> <li>- 주요사업 : 도정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·연구 등</li> </ul> </li> </ul>		
<b>사업내용</b>			
<b>사업개요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</li> <li>○ 사업내용 : 연구직 「승진 가산제도」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승진(11년차, 16년차) 시 前 직급 평균 연봉액의 7% 가산에 따른 인상금</li> </ul> </li> <li>○ 금회 출연금액 : 109,901천원</li> </ul>		
<b>출연필요성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타 시도 연구원과의 현격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장기근속 연구직 「승진 가산제도」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(승진가산금) 지원 필요</li> </ul>		
<b>근거법령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</li> <li>○ 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2항</li> </ul>		
<b>검토의견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충북연구원은 전국 최초 설립('90.5.) 이후 지역 현안 조사·분석, 대안 제시 등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충북의 대표 연구기관이나</li> <li>○ 타 시도 연구원의 임금수준과 비교하여 신규자(전국평균 대비 90.4%)에 비해 10년이상 장기근속자(전국평균 대비 78.6%)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보수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</li> <li>○ 이에 우수 연구인력의 유출 방지 및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근속 연구직원에 대한 '승진 가산제도'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추가 지원이 필요함</li> </ul>		

<b>주관부서</b>	정책기획관	소속부서장	팀장	담당주무관	전화
		박기순	조미숙	이경화	220-2123

## < 출연기관 현황 >

설립근거	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				전화번호 : 043-220-1147			
	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				홈페이지 : www.cri.re.kr			
주요연혁	- 1990.05.15. 충북경제연구소 개소 - 1994.12.27. 충북개발연구원 명칭변경 - 2011.03.24. 충북발전연구원 명칭변경 - 2016.04.20. 충북연구원 명칭변경				기관형태 (출자,출연)	출연기관		
인원현황 ('22.1월말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	비정규직		
	98		42			56		
임원 ('22.1월말 기준)	직책(직책명)	성명	소속(직위)			임기		
	이사장	이00	충청북도지사			재임기간		
	이사(당연직)	서00	충청북도 행정부지사			재임기간		
	"	신00	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			재임기간		
	"	이00	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			재임기간		
	"	이00	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			재임기간		
	"	강00	신한은행 충북지역본부장			재임기간		
	"	정00	충북연구원장			재임기간		
	이사(선임직)	한00	충북지역개발회 회장			20.10.19 ~ 23.10.18		
	"	주00	청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			20.10.19 ~ 23.10.18		
	"	유00	미래농어촌개발연구원 대표			20.10.19 ~ 23.10.18		
	"	백00	한국교원대학교 교수			20.10.19 ~ 23.10.18		
	"	고00	대원대학교 총장			20.10.19 ~ 23.10.18		
	"	안00	청풍로펌 변호사			20.10.19 ~ 23.10.18		
	"	김00	충북대학교 총장			20.10.19 ~ 23.10.18		
	"	차00	청주대학교 총장			20.10.19 ~ 23.10.18		
	"	차00	충북경제포럼 회장			20.10.19 ~ 23.10.18		
	"	고00	극동대학교 교수			20.10.19 ~ 23.10.18		
	감사(당연직)	박00	충청북도 정책기획관			재임기간		
	감사(선임직)	김00	공인회계사			20.10.19 ~ 23.10.18		
주요기능	-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정책 수립 -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- 국내·외 각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각종 정보·자료의 수집 및 제공							
자본금(기금) (단위:백만원)		2,171			지방공기업발전기금 (단위:백만원)		-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 백만원)	연도	2019	2020	2021	재무현황 (백만원) '20.12.31기준	자산	15,589	
		예산액	5,706	5,452		5,645	부채	2,072
		지자체 지원액	4,400	4,400		4,450	자본	13,517
2020년 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	
	10,272			11,986		-1,714		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 □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13조(운영재원)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
1.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
2.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.

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#### 제6조(운영경비)

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기금운용의 과실수입
2.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
3. 출판물 판매 대금
4. 그 밖의 수입

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